

## 회계규정 개정(안)

### □ 개 정 사 유

- 중앙회의 신용보증재단 회계처리기준 표준안 개정에 따라, 지역신보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하여, 「대지급금상각충당금」 계상방법을 표준안을 준용하여 변경

### □ 개 정 내 용

#### ○ 대지급금상각충당금 계상방법 변경

- 현행 규정은 대지급금의 손실에 대비하는 대지급금상각충당금을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계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음.
- 그러나, 대지급금은 재보증보전금 수령 대상이 아니며, 회수금 충당순서에 의하여 구상채권 회수시 대지급금이 우선회수됨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율이 구상채권 회수율 보다 높음.
- 실질에 맞도록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회계처리 방법임.

변 경 전	변 경 후
대지급금잔액 × 구상채권대손율 - 재보증보전금	대지급금 잔액 × 대지급금대손율

#### ○ 변경효과

- 대지급금의 대손율을 적용함에 따라 충당금 11.3억원 축소계상 가능

2014년말 기준	변 경 전	변 경 후
적용 대손율	구상채권대손율 79.67%	대지급금대손율 43.76%
대지급금상각충당금	2,515,306,957 원	1,381,625,112 원
대지급금상각충당금전입액	1,220,333,039 원	86,651,194 원
당기순손실 영향	-	1,133,681,845원 손실감소

### □ 시 행 일 : 이사회 의결일

## 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현 행	개 정(안)
<p><b>회 계 규 정</b></p> <p>제1장 총칙 ~ 제5장 자산회계 제1조(목적)~제98조(법인세법의 준용) (기재 생략)</p> <p><b>제6장 결산</b></p> <p>제99조(결산)~제110조(결산지침) (기재 생략)</p> <p>제111조(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계상) ①기말의 구상채권(대지급금을 포함한 다.) 잔액에서 재보증기관의 재보증보전금을 차감한 금액에 구상채권 대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<u>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구상채권대손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</p>	<p><b>회 계 규 정</b></p> <p>제1장 총칙 ~ 제5장 자산회계 제1조(목적)~제98조(법인세법의 준용)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6장 결산</b></p> <p>제99조(결산)~제110조(결산지침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1조(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의 계상) ①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기말의 구상채권 잔액에서 재보증기관의 재보증보전금을 차감한 금액에 구상채권 대손율을 곱하여 <u>계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<u>대지급금상각충당금</u>은 기말의 대지급금 잔액에서 대지급금대손율을 곱하여 <u>계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제1항의 구상채권대손율 및 제2항의 <u>대지급금대손율</u>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경험률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(안)
$\frac{\text{구상채권 회수액}}{\text{구상채권 발생액}} \times 100$ $\frac{\text{대지급금 회수액}}{\text{대지급금 발생액}} \times 100$ <p>(신설)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 $\frac{\text{대지급금 회수액}}{\text{대지급금 발생액}} \times 100$
<p>③당기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은 제1항에 의거 계산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서 결산전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결산전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제1항에 의거 계산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을 영업외수익,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환입액으로 환입한다.</p>	<p>④당기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(대지급금상각충당금 전입액)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(대지급금상각충당금)에서 결산전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(대지급금상각충당금)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결산전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(대지급금상각충당금)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산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(대지급금상각충당금)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을 영업외수익,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환입액(대지급금상각충당금 환입액)으로 환입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결산</b></p> <p>제112조(결손처리)~제113조(장부의 마감과 이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7장 경영분석</b></p> <p>제114조(목적)~제115조(재정상태분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기재 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6장 결산</b></p> <p>제112조(결손처리)~제113조(장부의 마감과 이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7장 경영분석</b></p> <p>제114조(목적)~제115조(재정상태분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(안)
<p data-bbox="316 327 679 367">부칙(제정) ~ 부칙(12)</p> <p data-bbox="400 396 580 436">(기재 생략)</p> <p data-bbox="440 517 555 557"><u>(신 설)</u></p> <p data-bbox="188 831 719 871">〔별표〕 관리업무비 예산과목 해설표</p> <p data-bbox="400 900 580 940">(기재 생략)</p>	<p data-bbox="979 327 1343 367">부칙(제정) ~ 부칙(12)</p> <p data-bbox="1048 396 1260 436">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1034 517 1291 557">부 칙 (13)</p> <p data-bbox="839 586 1473 692">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data-bbox="855 831 1386 871">〔별표〕 관리업무비 예산과목 해설표</p> <p data-bbox="1048 900 1260 940">(현행과 같음)</p>